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건설 관련 공사 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·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(안 제9조제1항 등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